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540

발의연월일: 2025. 2. 27.

발 의 자:구자근・김재섭・김선교

최수진 · 강승규 · 박준태

박덕흠 • 이만희 • 신동욱

인요한 · 김도읍 · 김은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2027년 말까지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하면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신성장·원천기술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로봇은 시행령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으나 국가전략기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로봇의 활용 확대 및 관련 산업의 성장 등을 고려할 때 로봇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로봇을 법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는 한편, 각 기술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로봇 기술의 육성 및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7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바이오의약품"을 "바이오의약품, 로봇"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제10조(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 세액공제) ① -----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 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7년 12월 -----202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 31일-----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 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 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 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 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이오<u>의약품, 로봇</u>-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

현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계산한 금액가.・나.(생략)

② ~ ⑥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